

제255회 제1차 정례회
광진구의회

2023년도 (재)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

2022. 10. 14.

기획행정위원회

2023년도 (재)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1951호
----------	--------

2022.10.1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2. 9. 7.
- 나. 회부일자 : 2022. 9. 19.
- 다. 상정일자 : 2022. 9. 30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지영순 행정국장

나. 제출사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제3항의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1) 출연의 대상 :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
- 2) 출연의 필요성
 -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경쟁력 및 전문성, 차별성 강화를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,
 - 나루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,

- 광진문화재단(공연장)의 대외적 신뢰도 상승 및 긍정적 이미지 확립을 위한 브랜딩 구축,
-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의 재단 운영목적의 원활한 달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함

3) 출연금 결정

-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, 2023년도 사업예산(안) 심의·결정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지원)
 「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이경수)

- 2023년도 (재)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2년 9월 8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.
- 본 동의(안)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는 규정에 따라 2023회계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에 (재)광진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광진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.
- (재)광진문화재단은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, 재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 나루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, 재단(공연장)의 브랜딩 구축,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문화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임.

○ 종합검토의견

- 2023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관련 법률 및 「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의 “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” 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, 출연금의 규모 및 적적성에 대하여는 본예산 편성 시 검토함을 전제로 본 동의안의 사전 제출 및 동의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